

## 참고

##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 - 2022년

###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

취업지원 관련 법령 및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 
채용시험 가점제도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제공

#### ① 채용시험 가점 부여 (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1항, 제2항)

가. 취업지원실시기관은 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대상자의 점수에  
가점(만점의 10% 또는 5%)을 하여야 함

나. 채용시험이 1)필기·실기·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거나 각 시험이 둘  
이상의 과목인 경우, 각 시험별·과목별로 가점을 함

⇒ 실시기관의 자체 규정상 각 전형별 일정 점수 이하 탈락기준이 있는 경우,  
응시자의 원점수에 가점을 적용한 점수를 기준으로 탈락 여부 결정

※ 단, ①취업지원대상자의 원점수가 만점의 40%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, ②점수로  
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가점하지 않음

#### ② 「가점합격 상한제」에 따른 합격자 결정 (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3항)

가. '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(가점합격자)'의 의미

⇒ 가점으로 인하여 합격점수를 넘은 사람

※ 가점을 받았지만, 가점을 제외한 원점수로도 합격점수를 넘은 사람은 가점  
합격자에 해당하지 않음

나. '선발예정인원'의 의미

⇒ 공고상 '최소 모집단위'의 최종 선발인원(=모집인원)

| 상이한 모집 분야인 경우 |                   | 동일한 모집 분야지만 지역 단위로 채용<br>* 서울·나주·원주별 채용 별도 실시 |      |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모집단위          | 모집인원<br>(=선발예정인원) |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모집단위 | 모집인원<br>(=선발예정인원) |
| 행정            | 1명                | 행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서울   | 8명                |
| 보건            | 2명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나주   | 3명                |
| 시설            | 3명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원주   | 4명                |
| 통신            | 4명                | 보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서울   | 2명                |

1) 예시 규정임. 즉 1차·2차·3차시험 등으로 구분된 시험 전부를 말함

다. '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'의 의미

⇒ 합격자 결정 시 가점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0%내에서 결정

※ 경우에 따라 가점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으며 가점합격자가 상한 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인원을 합격자에서 제외하고, 응시자 가운데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

(예시1) 선발예정인원이 8명인 경우, 가점합격자 상한 인원은 2명임

i) 가점합격자가 0~2명인 경우, 충족

ii) 가점합격자가 3명인 경우, 상한 인원 초과

→ 후순위 가점합격자 1명을 합격자에서 제외, 응시자 중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

(예시2) 필기시험 합격자: 10명(가점합격자 상한인원: 3명),      : 취업지원대상자

| 응시자 | 원점수<br>(a) | 가점<br>(b) | 합산점수<br>(a+b) | 순위 | 가점합격<br>여부 | 결정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A   | 95         | 5         | 100           | 1  | 부          | 1) 가점점수를 기준으로 '합격선' 결정<br>2) 합격선과 원점수를 비교, '합격선> 원점수' 인 응시자를 가점합격자로 인정 (응시자 D,G,I 해당)<br>※ 응시자 A는 가점을 받았지만 원점수로도 합격선 이상이므로 가점합격자가 아님<br>3) 최종적으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응시자 A~J(10명)로 결정.<br>※ 가점합격자는 응시자 D,G,I(3명)로 가점합격자 상한 충족 |
| B   | 99         | -         | 99            | 2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C   | 98         | -         | 98            | 3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D   | 87         | 10        | 97            | 4  | 여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E   | 96         | -         | 96            | 5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F   | 95         | -         | 95            | 6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G   | 84         | 10        | 94            | 7  | 여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H   | 93         | -         | 93            | 8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I   | 87         | 5         | 92            | 9  | 여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J   | 90         | -         | *90           | 10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K   | 88         | -         | 88            | 11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L   | 82         | 5         | 87            | 12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M   | 81         | -         | 81            | 13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(예시3) 모집단위가 다른 경우 가점합격상한제 적용(예)

|                      | <table><tr><th>모집단위</th><th>모집인원<br/>(=선발예정인원)</th></tr><tr><td>행정</td><td>1명</td></tr><tr><td>보건</td><td>2명</td></tr><tr><td>시설</td><td>3명</td></tr><tr><td>통신</td><td>4명</td></tr></table> | 모집단위 | 모집인원<br>(=선발예정인원) | 행정 | 1명 | 보건 | 2명 | 시설 | 3명 | 통신 | 4명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
| 모집단위                 | 모집인원<br>(=선발예정인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
| 행정                   | 1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
| 보건                   | 2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
| 시설                   | 3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
| 통신                   | 4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
| 통신 직렬에서만 가점합격자 1명 가능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

|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분야 | 모집단위 | 모집인원<br>(=선발예정인원) |
| 행정 | 서울   | 8명                |
|    | 나주   | 3명                |
|    | 원주   | 4명                |
| 보건 | 서울   | 2명                |

| 행정(서울)과 행정(원주) 채용시험에서 가점합격자 각각 2명, 1명 가능 |  |

통신 직렬에서만 가점합격자 1명 가능

라.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내인 경우(※질의 빈번)

⇒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시험의 경우, 원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며, 가점합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(가점은 합격순위에만 영향)

(예시4) 선발예정인원: 3명(가점합격자 없음),      : 취업지원대상자

| 응시자 | 원점수<br>(a) | 가점<br>(b) | 합산점수<br>(a+b) | 순위 | 합격여부 | 결정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A   | 99         | -         | 99            | 1  | 여    | 1) 원점수로 '합격선' 결정<br>2) 최종적으로 A, B, C(3명) 합격<br>※ 응시자 B는 가점을 받았지만<br>가점합격자는 아님(원점수 합격)<br>3) 이때, 가점은 합격순위에만 영향 |
| B   | 91         | 5         | 96            | 2  | 여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C   | 92         | -         | 92            | 3  | 여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D   | 90         | -         | 90            | 4  | 부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E   | 87         | 10        | 97            | 5  | 부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⇒ 각 시험단계별로 가점합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(원점수로만 평가)

(예시5) 채용시험이 1차, 2차, 3차 시험으로 구분된 경우

| 구 분        | 1차 필기시험<br>(선발예정인원의 5배)        | 2차 실기시험<br>(선발예정인원의 2배)       | 3차 면접시험<br>(선발예정인원)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선발예정인원: 3명 | · 합격예정인원 15명<br>· 가점합격 상한인원 0명 | · 합격예정인원 6명<br>· 가점합격 상한인원 0명 | · 합격예정인원 3명<br>· 가점합격 상한인원 0명 |
| 선발예정인원: 4명 | · 합격예정인원 20명<br>· 가점합격 상한인원 6명 | · 합격예정인원 8명<br>· 가점합격 상한인원 2명 | · 합격예정인원 4명<br>· 가점합격 상한인원 1명 |

⇒ 다만, 예외적으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라도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

\*(동법 제31조 제3항 단서)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있음

(예시6)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지만, 가점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

- 선발예정인원이 3인인 채용에서 4명 응시 ⇒ 가점합격자 미발생
- 선발예정인원이 3인인 채용에서 1~3명 응시 ⇒ 가점합격자 발생\* 가능

\*응시자에게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

⇒ 또한,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선발하는 것은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라도 적용하여야 함(제31조 제4항)

마. '점수로 환산이 가능한 시험'과 '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'이 단계별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

⇒ 점수로 환산이 가능한 시험에서는 가점 부여 및 가점합격 상한제를 적용,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서는 가점합격 상한제만 적용

(예시7) 점수 환산 불가능한 시험이 포함된 경우

| 1차 필기시험<br>(점수 환산 가능)  | 2차 실기시험<br>(점수 환산 가능)  | 3차 면접시험<br>(점수 환산 불가능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·가점 부여<br>·가점합격 상한제 적용 | ·가점 부여<br>·가점합격 상한제 적용 | ·가점 미부여<br>·가점합격 상한제 적용<br>* 1차 필기시험, 2차 실기시험 가점 합격자가 3차 면접시험 합격예정 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 |

(예시8) 1차 필기(5배수, 합격선 92점), 2차 면접을 통해 5명을 최종선발하는 경우  
- 최종합격자는 2차 면접 합격자 가운데 1차 필기시험 고득점 순위로 결정

| 응시자 | 1차 필기 |     |      | 2차 면접<br>통과/탈락 | 합격여부 | 결정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|-----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| 원점수   | 가점  | 합산점수 |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A   | 90    | 10  | 100  | 통과             | 합격   | 1) 1차 필기시험의 선발인원이 25명으로 가점합격자 7명 가능<br>2) 2차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 5명이 선발되는 경우, 가점합격자는 1명까지만 가능<br>(1차 필기시험 가점합격자인 A와 D 가운데 고득점자인 A가 합격하고 D는 탈락, 응시자 중 차순위인 F가 합격) |
| B   | 99    | -   | 99   | 통과             | 합격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C   | 98    | -   | 98   | 통과             | 합격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D   | 87    | 10  | 97   | 통과             | 불합격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E   | 96    | -   | 96   | 통과             | 합격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F   | 95    | -   | 95   | 통과             | 합격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... | ...   | ... | ...  | ...            | ...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바. 추가합격 관련 가점합격 상한제 적용

⇒ 임용포기 등 결원 발생으로 추가합격자를 선발하는 경우, 기존 가점 합격자를 포함하여 당초 선발예정인원의 30% 내에서 합격자 결정

(예시9) 선발예정인원: 10명(G가 임용 포기),      : 취업지원대상자

| 응시자 | 원점수 | 가점 | 합산점수 | 순위 | 합격여부 | 결정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|----|------|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A   | 95  | 5  | 100  | 1  | 합격   | 1) 먼저 모든 취업지원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하여 종합점수 산출<br>※ A는 가점합격자 아님(원점수로도 합격)<br>2) 취업지원대상자 G가 최종합격후 임용 포기했으므로 차상위자(11위)인 K를 합격 처리<br>(취업지원대상자 L은 12위이나 종합점수가 11위 K보다 낮으므로 '가점합격 상한인원'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처리) |
| B   | 99  | -  | 99   | 2  | 합격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C   | 98  | -  | 98   | 3  | 합격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D   | 87  | 10 | 97   | 4  | 합격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E   | 96  | -  | 96   | 5  | 합격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F   | 95  | -  | 95   | 6  | 합격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G   | 84  | 10 | 94   | 7  | 포기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H   | 93  | -  | 93   | 8  | 합격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I   | 87  | 5  | 92   | 9  | 합격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J   | 90  | -  | 90   | 10 | 합격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K   | 88  | -  | 88   | 11 | 추가합격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L   | 77  | 5  | 82   | 12 | 탈락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M   | 81  | -  | 81   | 13 | 탈락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사. “취업지원 대상자”만 모집하는 제한경쟁 채용시험에도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3항 본문\*이 적용되는지 여부

\*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다

⇒ 가점합격자 30% 상한 규정은 일반인과 취업지원 대상자가 모두 응시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에만 적용

⇒ 보훈특별고용 등 취업지원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채용시험시 ‘취업지원 대상자’별 가점(만점의 10%, 만점의 5%)을 구분하여 적용

[가점 구분 적용 이유]

- '07.3.29. 법령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본인, 전몰·순직군경 자녀 등을 제외한 국가유공자 자녀 등의 가점 비율을 축소하는 등 취업지원 대상자 사이에 가점비율의 차이(5%, 10%)를 두어 **가점비율 적용 여부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수 있으므로**
- 보훈처의 특별고용(특별채용) 추천된 취업지원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라 **구분하여 가점**하도록 함

(예시10) 취업지원대상자 제한경쟁 채용시험에서 5명 선발

| 응시자 | 원점수<br>(a) | 가점<br>(b) | 합산점수<br>(a+b) | 순위 | 합격여부 |
|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|------|
| A   | 89         | 10        | 99            | 1  | 합격   |
| B   | 90         | 5         | 95            | 2  | 합격   |
| C   | 87         | 5         | 92            | 3  | 합격   |
| D   | 81         | 10        | 91            | 4  | 합격   |
| E   | 85         | 5         | 90            | 5  | 합격   |
| F   | 82         | 5         | 87            | 6  | 탈락   |
| G   | 80         | 5         | 85            | 7  | 탈락   |

③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합격 (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4항)

가. 일반응시자와 취업지원대상자 간 동점이 발생하는 경우, 각 전형(서류·필기·실기·면접 등)에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야 함

※ 선발예정인원 수와는 상관없이 적용되며, 모집 공고 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사항을 명시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

(예시11) 선발예정인원: 4명,      : 취업지원대상자

| 응시자 | 원점수<br>(a) | 가점<br>(b) | 합산점수<br>(a+b) | 순위 | 합격여부 | 결정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A   | 95         | -         | 95            | 1  | 합격   | D는 가점을 부여한 점수로 E와 동점임<br>동점 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합격<br>규정에 따라 'D'를 합격자로 결정 |
| B   | 90         | -         | 90            | 2  | 합격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C   | 89         | -         | 89            | 3  | 합격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*D  | 75         | 10        | 85            | 4  | 합격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*E  | 85         | -         | 85            | 5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F   | 70         | -         | 70            | 6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G   | 65         | -         | 65            | 7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나. 취업지원대상자 사이에 동점자가 발생하여 '가점합격자 상한 인원 (채용예정인원의 30%)'을 초과하는 경우

- 취업지원실시기관 내 채용 관련 규정 중 '동점자 처리기준' 등에 따라 합격자 선정

## □ 국가유공자법

제31조(채용시험의 가점 등)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(加點)하여야 한다.

1.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

가.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

나.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

2.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

가.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

나.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

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·실기·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,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. 다만,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(換算)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(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또는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)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(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)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·직급·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□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 지침

제41조의3(국가유공자 등 가점 및 가점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)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채용 시험에 응시한 사람의 합격자 결정시에는 본인이 취득한 점수에 가점을 부여한 점수를 합산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
② 가점하지 않은 점수로도 채용시험에 합격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3항, 보훈보상자법 제35조 제3항, 5·18유공자법 제22조 제3항, 특수임무유공자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가점을 받아 합격한 사람(이하 ‘가점합격자’라 한다)에서 제외한다.

③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3항, 보훈보상자법 제35조 제3항, 5·18유공자법 제22조 제3항, 특수임무유공자법 제24조 제3항에서 규정한 ‘선발예정인원’이란 채용시험 공고상 최소 모집단 위의 최종 선발예정인원을 말한다.

④ 채용시험이 필기·실기·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고 각 시험마다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, 각 시험의 가점합격자는 각 시험 합격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시험에서는 필기·실기·면접시험 등 각 시험마다 가점합격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.